조선에서 감행된 일제의 식민지총독통치의 반동성

김 은 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잔인무도한 총독정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을 야만적방법으로 통치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제2권 451폐지)

20세기초 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쳐 세계력사 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을 일방적으로 날조하고 종전의 보호통치(통감통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통치수법인 충독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20세기 전반기 일제가 식민지총독통치를 실시한 나라는 조선과 대만뿐이였다.

이 글에서는 총독통치기간(1910-1945년) 우리 나라에서 감행된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중앙집권적 및 군사적성격을 자료적으로 해부함으로써 그의 침략적이며 반동적인 성격을 까밝히려고 한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총독통치의 반동성은 우선 그것이 식민지력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단한 정권불분할정책(정치적권리를 나누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 관된 중앙집권적인 통치였다는데 있다.

일제는 총독통치초시기부터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는 중앙집권적지배체 제의 확립을 기도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미쳐날뛰였다.

이미 밝혀진것처럼 일제는 총독통치초시기부터 조선《총독부》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를 수립하고 식민지통치를 감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천황》의 《칙령》에 따라 설치되였으며 조선《총독》은 일본《천황》이 직접 임명하였다. 조선《총독》은 일본《천황》에게 직속되여있었으며 그의 임명 및 해임그리고 권한행사에 관한 문제는 일본국회와 추밀원에서도 간섭하지 못하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총독통치의 중앙집권적성격은 총독에 의한 립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장악과 그 행사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르죠아국가체계에서 립법권은 해당 국회에 부여되여있으며 그것은 어 길수 없는 하나의 《법칙》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식민지총독통치시기 우리 나라에는 그 어 떤 국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립법권은 오직 조선《총독》에게만 쥐여져있었다.

일제는 조선에서 립법상으로 일본과 같은 제도를 채용할수 없다고 하면서 1910년 8월 긴급《칙령》324호로《조선에 시행되는 법령에 관한 건》을 발포하여 식민지조선에서 만 적용실시되는 립법제도를 내왔다.

그후 일제는 1911년 3월 다시 《법률》 30호로서 조선《총독》에게 《위임립법》 즉 총독 자신이 명령으로써 법률적성격을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은 《제령》(制令)권을 행사하게 되였으며 그것은 일본의 국회를 뛰여넘어 일본총리대신을 거쳐 《천황》의 승인만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할수 있게 되였다.

사법권행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조선에서 일제의 식민지사법기관은 일본본토의 사법기관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구 였으며 다만 사법사무의 공조(서로 도와준다는 뜻)에서만 일본 및 기타 식민지들과 대등 한 관계에서 서로 련계를 가지고있었다.

조선《총독부》재판소는 일본의 대심원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공소원에 해당하는 복심법원, 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청의 3급3심제로 구성되였으며 사법행정은 일본의 사법성관할에 속하지 않고 철저히 조선《총독부》에 직속되여있었다. 또한 재판소의 구성, 재판관의 임명, 신분보장 등 실무적인 문제들도 일본에서는 《법률》로써 결정하였지만 조선에서는 조선《총독》의 단독적인 명령인 《제령》에 의하여 결정되였다.*

*《조선에서 일본인의 활동에 관한 조사》일문 1977년 호북사 132페지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의 일제의 식민지통치체제는 부르죠아정치에서 떠들고있는 기 만적인 3권분립론마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오직 조선《총독》에게만 집중된 중앙집권적인 것이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의 중앙집권적성격은 지방자치기구들과 자치단체들의 관권화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조선인민에게 자그마한 정치참여의 가능성도 주지 않는것을 근본전제로 한 통치였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본성적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민의창달》과 《지방자치》를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마치도 조선인민에게 그 무슨 정치적자유를 허용하는듯이 가장하였다.

원래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총독통치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세계여론을 오도하기 위하여 도이하의 지방통치기구들의 성격을 《자치기구》로 규정하였고 3.1인민봉기이후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지방자치화》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식민지총독통치의 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기만술책이였으며 지방통치기구들이나 민간적인 자치기구들마저 더욱 철저히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얽어매기 위한것이였다.

일제가 자치기구의 《표본》이라고 극구 찬양한 도와 부 및 읍, 면의 권한을 일본국내의 부, 현, 시, 정, 촌 등과 대비해보면 그 실상을 잘 알수 있다.

일본국내의 각급 지방통치기구들은 형식상으로나마 의결기관이며 그 의원은 철저히 선거제에 의하여 선발되였다. 그러나 식민지조선의 경우 도회 및 부회는 명색상으로는 의 결기관으로 규정되였지만 여기에는 참사회(리사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도나 부 자체의 의안발표권이 부여되여있지 않았다. 또한 해당 의원선발은 임명이나 납세자격을 비롯한 여러가지 《자격》에 따른 제한적인 선거제였다. 뿐만아니라 조선《총독》은 도에 대하여 강 제예산권을 행사하였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회 및 부회결정과 그 집행을 정 지 또는 취소할수 있었다. 일제는 부 및 읍, 면들에 조직된 학교조합 등 자치단체들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부합되는 조건에서만 그 운영을 허락하였다.

유미렬강의 식민지와 비교해보아도 그렇고 일제가 통치한 다른 식민지들과 비교해보아도 조선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와 그 운영은 철저히 중앙집권제에 따른것이였고지방행정단위들인 도나 부, 군, 면이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은 하나도 없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점유한 식민지들에서는 해당 나라의 괴뢰정부가 조작운영되였으며 표면상으로나마 일정한 독자권이 행사되였다. 일제가 강점한 만주국이나 남양청, 화태청 등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앙집권 적이며 독단적인 식민지총독통치체계를 조작하고 장악하였으며 관리하였다.

일제는 대만강점직후인 1895년에 내각에 대만사무국을 설치한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896년에는 척식무성, 1910년에는 내각 척무국을 설치하여 식민지들에 대한 통치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후 1929년 6월 《칙령》 152호로 《척무성관제》를 공포하고 그의 기본 부서로서 1개의 부와 3개의 국 즉 조선부와 관리국, 식산국, 척무국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척무성 관리국으로 하여금 당시 저들의 식민지였던 대만, 관동주, 화태 및 남양을 관리하는 대만총독부, 관동청, 화태청, 남양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면서도 조선부만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에 관한 사무를 단독으로 관할하게 하였다. 그리고 조선부의 부장은 의례히 척무성차관을 겸임하도록 하고 오직 그만이 조선《총독》과 합의하여조선에서의 산업, 교통, 통신, 금융, 조세, 해외척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식민사》일문 동양경제신보사 1941년《척무성관제》참고

일제는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종래 조선봉건왕조의 실제적인 지배자였던 관료들의 권력을 빼앗고 그를 장악하는데 힘을 돌렸으며 일부 지방통치기구들에 친일적인 조선인관리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하였다.

1918년 조선《총독부》및 그 소속관서의 관리인원총수는 2만 1 302명이였으며 그가운데서 일본인은 1만 2 865명으로서 전체 관리수의 60.5%를 차지하고있었다. 그후 그 수는 계속 늘어나 1920년말에는 61.5%, 1925년에는 64.4%로 장성하였다.*

*《일본통치와 동아시아사회》일문 게이쇼서점 1996년 31폐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의 중앙집권적성격은 조선《총독부》와 일본의회와의 관계를 살펴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및 그 소속기구들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의회에서 협의하고 가부를 론하거나 공개하는것을 엄금하였다. 또한 조선《총독》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의회의원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규정함으로써 조선 《총독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본의회에서도 함부로 결정할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 일제는 《내외지행정일원화》(일본본토와 식민지에서의 행정일원화-필자)를 실시 하면서도 유독 식민지조선만은 거기에서 제외하였고 모든 식민지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외지공통법》(일본본토와 식민지에서 동일하게 시행되는 법-필자)시행을 조선에서는 《총독》의 《제령》으로 대치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본의회의 립법권과 그 시행사항이 식민지조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나라에서의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는 철저히 조선《총독부》에 의해 장악되였으며 조선《총독》을 우두머리로 하는 극도의 중앙집권 적통치체제였음을 명백히 알수 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총독통치의 반동성은 또한 군사강권적성격이 그 어느 식민지나라들보다 더 뚜렷하고 식민지통치전반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강탈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군사적인 방법에 의거하며 해당 나라들에서의 식민지통치는 군사폭압적성격을 띠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일제가 실시한 식민지통치는 그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성격으로 하여 다른 식민지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가혹한 군사강권적성격을 띠였다.

일제는 청일,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수많은 침략무력을 우리 나라에 들이밀었으며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방대한 무력을 주둔시키고 그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주권을 차례로 침식해나갔다.

일제는 1904년 10월 조선주차군사령부를 정식 조작하여 한성(서울)에 배치함과 동시에 전시편제의 무력을 평시체제로 개편하여 우리 나라에 상주시켰다. 이러한 침략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완전한 독점적식민지로 만들었고 군사강권적인 방법으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총독통치로 이행하면서 일제는 우리 나라에 주둔시킨 침략무력을 《조선군》으로 명명, 개편하고 그를 더욱 강화하면서 식민지폭력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일제는 《제국의 강점(조선지배-필자)은 군의 정예에 있다. 동아천지를 지배할수 있는 것은 륙군이다. …륙군을 들어내면 제국의 위상은 엷어지고 결국은 제2, 제3류국의 지위 로 추락할것이다.》*고 뇌까리면서 그 강화에 최대의 힘을 돌리였다.

*《우가끼일기》일문 건조사 1950년 734폐지

따라서 일제는 강점초기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군사강권적인 토대우에 서 가장 악랄하게 실시하였다.

조선에서의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군사강권적성격은 조선《총독부》및 그 소속 행정기 구들에 대한 《조선군》의 영향력행사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일제는 총독통치 전기간 식민지행정기구들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강하게 유지하였으며 특히 1930년대 중엽이후 《총독부》행정체계를 완전히 군권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의 《조선군》은 단순히 조선《방위》를 위한 군사적임무에만 주력한것이 아니라 조선인징병,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의 실현 등 실제적인 통치상의 《중대문제》 들을 직접적으로 장악, 집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문제를 조선《총독부》에만 맡겨두지 않았으며 《조선

군》과 서로 협력하여 《조선통치의 개선에 매진》하기 위한 방책을 토의결정하였다.

그 방책의 하나가 조선인지원병제도의 제안과 실행이였다. 지원병제도는 침략전쟁에 필요한 인적자원확보의 목적과 함께 보다 중요하게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최대의 방침이였던 《황국신민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였으며 그 중요한 구성부분이 였다. 이 《중대》한 문제를 직접 발기하고 맡아나선것이 바로 《조선군》이였다.

《조선군》은 유사시 조선사람들을 병력자원으로 동원시킬것을 규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였으며 1937년 7월에 《병력문제해결을 위한 시험적제도로서 조선인장정을 지원에 따라 현역복무시키는 제도를 창정하는것이 적당하다.》는 내용으로된 《조선인지원병제도에 관한 의견》을 정식 일본의회와 륙군성에 제기하였다.

일제는 뒤이어 《륙군특별지원병령》, 《륙군특별지원병령시행규칙》, 《조선〈총독부〉륙군 병지원자훈련소관제》 등을 련이어 공포하고 그 집행을 《조선군》에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실례로 《조선〈총독부〉륙군병지원자훈련소》는 그 명칭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총독부》에 소속된 기관이였으나 훈련소의 예산만 《총독부》가 지출하고 그외의 모든 업무는 일체 《조선군》사령부가 파견한 현역군인들에 의해서 집행되었으며 그에 대해서 《총독부》의 관계부서들은 일체 관여하지 못하였다.

《조선군》의 영향력은 행정통치기구인 《총독부》의 기구편성에서도 강하게 행사되였다. 실례로 일제의 《조선군》은 《국민체력향상을 위해 조선에서 보건위생시설의 개선》을 주장하면서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부터 체력증진, 보건위생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그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총독부》에 한개의 국을 새로 내올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941년 《총독부》기구개편에서는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후생국이 새로설치되였다.*

*《동양문화연구》일문 제5호 학습원대학동양문화연구소 2003년 164폐지

《조선군》은 또한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물적자원통제와 관리를 위하여 자원개발, 물자동원, 군수산업의 확대를 목표로 한 도로, 항만, 철도, 통신, 방공, 기상, 교육, 훈련, 마사, 위생, 농림 등의 요구사항을 《총독부》에 정상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그 집행을 담당한 자원주임참모를 따로 임명하여 조선《총독부》안에 상주시키였다.

자원주임참모는 《조선군》의 대변자로서 민간기업이나 은행, 단체들은 물론 《총독부》 와 그 아래기구들에 대한 조정자적역할을 수행하였다.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군》의 영향력은 자치단체들의 운영에서도 나타났다.

이미 본바와 같이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그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수많은 자치기구들을 조작, 운영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기구들에 대한 군사적통제 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기구직제에 겸임제를 내오고 《조선군》우두머리들을 무조건적으 로 임명, 배치하였다.

그 실례로 1938년부터 광란적으로 벌어진 국민총력운동의 실천적담당기구인 국민총 력조선련맹을 들수 있다.

일제는 국민총력조선련맹을 조작하면서 그의 목표와 기구체계가 일본국내에서 벌어지고있던 대정익찬운동(대정년간에 전쟁수행을 위해 일본에서 벌어진 국민운동)과 동일하다고 떠벌였다. 그러나 대정익찬운동의 직접적담당자였던 대정익찬회와는 달리 국민총력

조선련맹은 《총독부》행정기구체계와 완전히 일치되였으며 그 요직에는 조선《총독부》 고 위관료들과 함께 《조선군》의 우두머리들이 배치되였다.

일제가 사회단체로서의 국민총력조선련맹기구안에 군부우두머리들을 배치한것은 명백히 식민지조선에서의 모든 기구와 운동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것이였다.

이외에도 조선중앙정보위원회, 조선방공협회 등 각종 기구, 단체들에 대한 《조선군》 의 영향력행사는 비상히 높았으며 그것은 다른 식민지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특징으로 되였다.

이처럼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세계 그 어느 식민지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가혹한 중세기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감행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간교한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식민지통치의 침략적이고 략탈적인 성격을 한사코 부정하고있으며 패망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과 거청산을 끝끝내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책동에 한사코 매달리고있다.

일본은 이미 1953년 10월 제3차 남조선-일본회담 본회의에서 《…일본의 통치는 조선에 유익하며 은혜를 준 면도 있다.》고 떠벌였는가 하면 2003년 10월 당시 도꾜도지사였던 이시하라 신따로 역시 《한일합병》은 《조선인스스로의 뜻에 따른것》이며 《조선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주의는 인간적이였다.》는 망언을 마구 줴쳤다.*

*《조선분할》일문 아이찌대학 국제문제연구소 1992년 12~13폐지,《아사히신붕》일문 2003년 10월 28일부

일본이 과거범죄를 한사코 회피하려 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지난날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자는것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심히 오산하고있으며 그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은 불패의 힘을 지닌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절대로 놀래울수 없다.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인 사변은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다.

우리는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 직하고 혁명의식, 반제계급의식을 백배로 다져나가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대진군에서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조선《총독부》, 력사외곡